

소비자경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경보 2022-10호 (2022년 9월 16일)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가**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최근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조치현황

✓ 금융감독원은 '22.1~8월 중 11,116건의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금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

✓ 유형별로는 **통장매매 (210.8% ↑), 작업대출 (70.8% ↑), 개인신용정보 매매 (21.0% ↑)** 불법금융광고 관련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 그 외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광고도 꾸준히 발생

유형 1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하여 대출해준다고 광고

"1~8등급 가능",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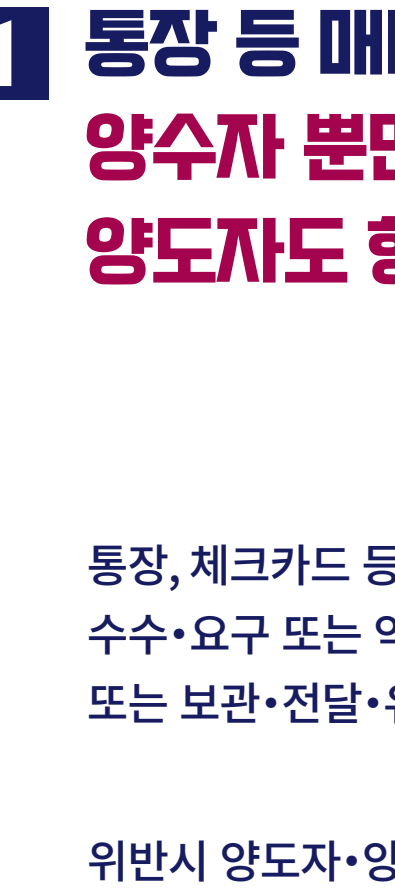
"인불자 대출"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

유형 2 통장 등 매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

example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와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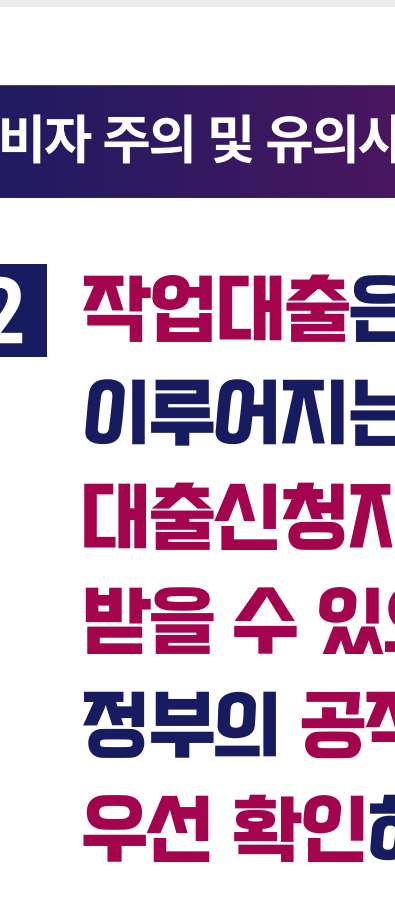
통장 뿐만 아니라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매입한다고 광고

특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

유형 3 개인신용정보 매매

불법 대출 마케팅, 도박장 개설, 스펜서광고 발송 등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불법업자 등이 주요 대상

example



"주식디비", "채테크디비", "맞춤형 대출디비" 등 용도별 Database를 건당 10~50원 가격을 제시

회원들의 성명,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투자성향, 쇼핑실적 등 상세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고 유인

유형 4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청소년, 무직자 등 **당장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example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하여 준다고 광고

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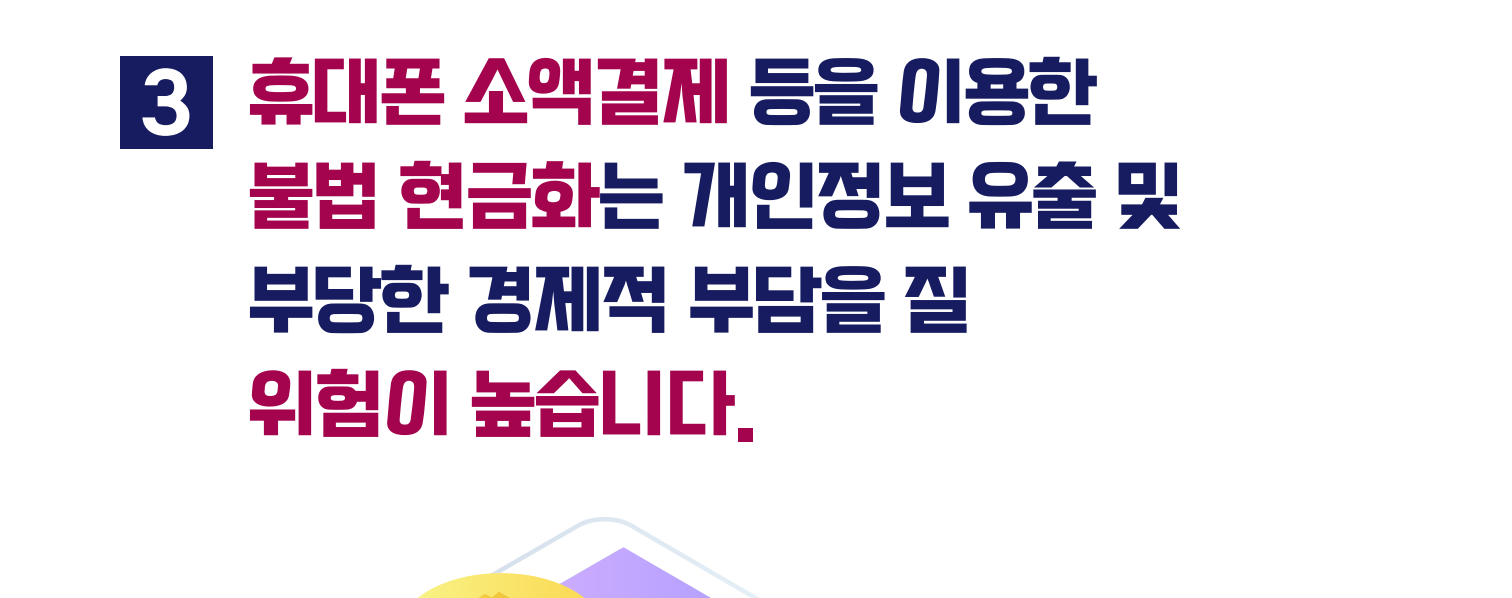
1 통장 등 매매는 양수자 뿐만 아니라 양도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양도자·양수자, 보관자, 전달자, 유통자 및 대여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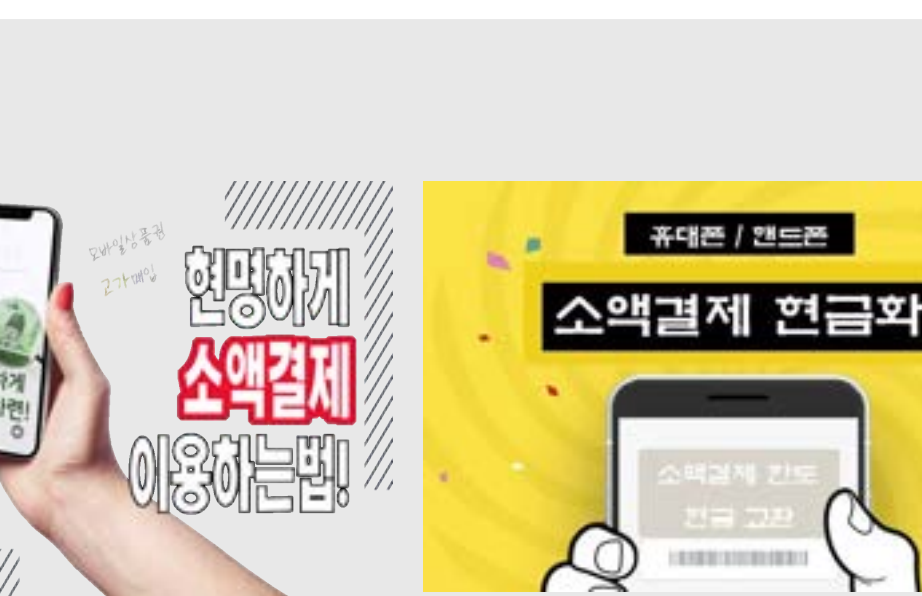
특히, 최근 들어 사기범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사칭하여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https://customer.crefia.or.kr/customer/main/main.xx>)를 통해 등록된 신용카드모집인 여부를 확인



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2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공적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사문서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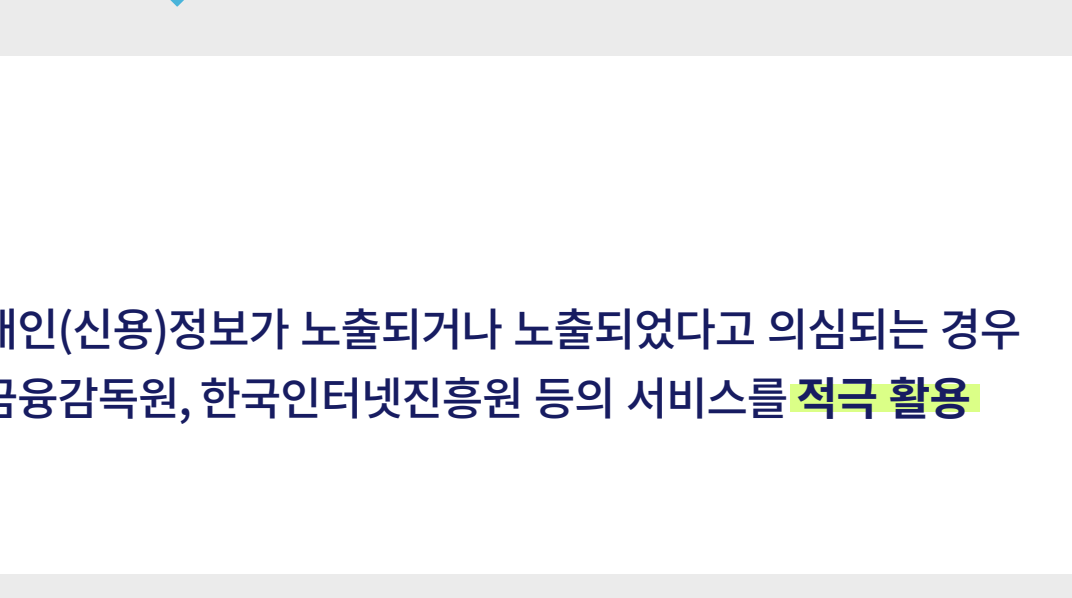
*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단순가담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작업대출업자는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작업대출상사시 대출금의 50~80%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신용등급 열람비용, 서류작업비, 출장비 등

대출신청자도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 전액을 갈취하여 잠적하는 등 **대출신청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



작업대출 등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금융감독원 : fine.fss.or.kr 또는 fss.or.kr/s1332
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국번없이 1397)
신용회복위원회 : www.ccrs.or.kr 또는 cyber.ccrs.or.kr(☎ 1600-5500)



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3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 현금화는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질 위험이 높습니다.

현금을 손쉽게 유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금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고금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할 필요

example

소비자 주의 및 유의사항

4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등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갈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어 추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표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 등을 클릭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특히 유의할 필요**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

기관명	서비스명	URL 주소	비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신고·조사,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payinfo.or.kr	명의도용된 계좌개설 여부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or.kr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을 조회 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상담
	e-프라이버클린서비스	epriacy.go.kr	출처가 있는 개인정보 조회, 본인확인내역 통합조회 등